### [별표 9]

#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 <제목변경 2021.1.1.>

#### 1.0 목 적

규칙 제5.1.1조 내지 제5.1.3조 및 제2.4.2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일일 발전계획 수립 업무와 계통한계가격 공개에 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급전업무의 수행과 전력수급의 안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. <개정 2006.9.14., 2021.1.1.>

#### 2.0 적용범위

- 2.1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<개정 2021.1.1., 2022.6.30.>
- 2.2 하루전발전계획 수립결과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 [신설 2022.6.30.]
- 2.3 신뢰도발전계획 수립 <번호변경 및 개정 2022.6.30.>
- 2.4 신뢰도발전계획 수립결과 공개 [신설 2022.6.30.]

#### 3.0 책임

- 3.1 전력거래소이사장 <개정 2022.6.30.> 본 별표에 의해 발전계획 수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하다.
- 3.2 발전계획담당자 <개정 2011.12.2., 2014.11.3., 개정 2021.1.1., 2022.6.30.>발전계획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립한다.
- 3.3 전력거래소 관제사 <개정 2021.1.1., 2022.6.30.> 본 별표에 의해 수립된 발전계획 운영 중 7.7.4에 따른 발전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을 재수립한다.
- 3.4 회원 [신설 2022.6.30.] 발전계획 수립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의 자료요청에 협 조하여야 하며, 제5.1.2조, 제5.1.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원사는 해당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발전계획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 한 준비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4.0 참고자료

- 4.1 별표4 입찰운영절차 <개정 2022.6.30.>
- 4.2 별표 5 전력수요예측 절차
- 4.3 발전계획시스템(RSC) 사용설명서 <개정 2022.6.30.>

4.4 RSC입출력프로그램(RSCT) 사용설명서 [신설 2022.6.30.]

#### 5.0 용어의 정의

- 5.1 일일 수요예측 거래일 24시간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며, 일일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 <개정 2021.1.1.>
- 5.2 발전계획 프로그램(RSC: Resource Scheduling & Commitment)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발전계획프로그램을 말한다. <개정 2021.1.1.> <번호변경 및 개정 2022.6.30.>
- 5.3 RSC입출력프로그램(RSCT) [신설 2022.6.30.]
  RSC에 필요한 입력데이터 형태로 자료를 변환하고,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RSC의 출력물을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.
- 5.4 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 [신설 2022.6.30.] 거래일 시간대별 각 발전기의 발전계획량 및 계통한계가격을 산출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5.5 입찰운영담당자 [신설 2022.6.30.] 하루전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초기입찰값을 관리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5.6 송전제약담당자 [신설 2022.6.30.] 하루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송전제약을 검토하고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 검토서를 작성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5.7 초기입찰 [신설 2022.6.30.] 발전사업자가 별지 제31호, 제32호의 서식에 맞추어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입찰을 말한다.
- 5.8 계획수립일 [신설 2022.6.30.]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거래일에 대한 계통한계가격을 발표하는 날짜를 말하며, 통상 거래일 전일이 해당되나, 거래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별표4 12.2에 따라 예약 입찰한 날을 말한다.
- 5.9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 [신설 2022.6.30.] <개정 2025.7.10.> 비중앙급전발전기,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,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및 중 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를 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만든 한 개의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를 말한다.
- 5.10 제약 완화 설정치 [신설 2022.6.30.] 에너지 수급, 예비력 확보, 송전제약 및 발전기 기술적 특성 제약 등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여 발전계획을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발전계획 재수립을 위해 제약조건을 한 단위 완화하기 위한 가상의 비용을 말한다.
- 5.11 경제급전상한(ECOmax) [신설 2021.12.28.] <번호변경 2022.6.30.>

송전단 기준 발전계획량을 배분할 수 있는 발전계획프로그램 상의 경제급전 상한을 말한다.

- 5.12 필수운전발전기(Must Run) [신설 2021.12.28.] <번호변경 2022.6.30.> 계통제약 및 하한제약 입찰 등 발전기 자기사유로 인하여 거래시간에 반드시 운전해야 하는 발전기를 말한다.
- 5.13 페어발전기 [신설 2022.6.30.] 기동용 변압기, 보조증기 공급설비 등 공용설비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기동

하도록 설계되었거나, 기타 사유 등에 의해 동시에 계통연결이 불가능한 두 개의 발전기를 말한다.

#### 6.0 기본워칙 <개정 2022.6.30.>

- 6.1 하루전발전계획은 거래일에 대해 수립되어 최초로 통지되는 발전계획으로 계획수립시 활용되는 자료의 시스템 입력 마감시간은 다음과 같다. [신설 2022.6.30.]
  - 1. 초기입찰 입력 : 계획수립일 11시
  - 2. 수요예측 입력 : 계획수립일 13시
  - 3. 수요반응자원 감축계획량 : 14시
  - 4. 송전제약 입력: 계획수립일 14시
  - 5.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산정 : 계획수립일 17시
  - 6. 하루전발전계획 및 계통한계가격 발표 : 계획수립일 17시
- 6.2 하루전발전계획 수립이후 변동사항(수요예측 변화, 설비 고장, 계통여건 변동 등)을 고려하여 운영당일 계통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뢰도발전계획을 수립한다. [신설 2022.6.30.]
- 6.3 6.1의 계획수립일은 통상 거래일 전일이며, 거래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별표 4 12.2에 따른 예약 입찰일을 의미한다. [신설 2022.6.30.]
- 6.4 휴일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.6.1에 따라 하루전발전계획 및 계통한계가격 발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[신설 2022.6.30.]

#### 7.0 절차 <개정 2022.6.30.>

- 7.1 자료의 취득 [신설 2022.6.00]
- 7.1.1 발전비용 자료취득

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비용평가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의결한 아래 각호의 발전비용 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한다. 만약,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가장 최근에 의결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전 자료를 계속 사용한다.

① 연료의 발열량 및 열량단가

- ② 발전기 출력과 열소비열량의 관계를 표시하는 1차열소비계수(LHCi), 2차 열소비계수(QHCi) 열소비상수(NLHCi)
- ③ 기동비용(SUCi): Hot, Warm, Cold
- ④ 정적손실계수(STLFi)
- 7.1.2 입찰 자료취득

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입찰운영담당자로부터 아래 각항의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한다.

- ① 규칙 제2.3.1조, 제2.3.2조, 제2.3.2조의2, 제2.3.4조에 따른 입찰자료
- ② 규칙 제12.4.2.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요반응자원 입찰자료
- 7.1.3 수요예측 자료취득

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수요예측담당자가 별표5에 따라 작성한 수요예측자 료를 제공받아 사용한다.

7.1.4 수요반응자원 감축계획량 자료취득 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수요반응자원담당자에게 규칙 제12.4.2.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요반응자원 감축계획량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한다.

- 7.1.5 송전제약 자료취득
- 7.1.5.1 육지 계통제약 취득

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송전제약담당자로부터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 검 토서를 제공받아 사용한다.

7.1.5.2 제주 계통제약 취득

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제주본부로부터 아래 각항의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한다.

- ① 제주연계선 설비용량, 공급능력, 운전한계량
- ② 제주지역 계통안정성을 고려한 필수운전발전기
- 7.1.6 송전제약의 검토
  - ① 계통해석프로그램(PSS/E, DSA등)을 사용하여 발전단 기준으로 송전제약에 대한 계통검토를 수행한다.
  - ② 송전제약 검토서는 계통검토 결과에 발전사가 입찰한 발전단전환비 실적을 고려하여 송전단 기준으로 적용한다.
  - ③ 전력설비의 휴전, 고장 등 적용시간대가 유동적인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단, 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한다. <개정 2024.10.29.>
  - ④ 발전계획시스템(RSC)에 모델링이 불가능한 송전제약의 경우 단순화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 검토서에 관련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.

#### 7.1.7 기타 자료취득

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송전사업자로부터 아래 각항의 자료를 제공받아 사 용한다.

- ① 규칙 제5.1.1조 제4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서 비스 제공가능여부 및 계통안정화를 위한 운전 가능여부 <개정 2025.2.11.>
- ② 규칙 제5.1.1조 제4항에 따른 FACTS 설비의 운전가능여부

#### 7.1.8 비중앙급전자원의 자료처리

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비중앙급전자원에 대하여 아래 각항과 같이 자료를 처리하다.

- ①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하루전발전계획에 반영하 기 위해 육지계통과 제주계통에 대해 한 개의 대표발전기(이하 '비중앙급전대 표발전기'라 한다)를 만든다.
- ②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비용자료 및 기술적 특성자료는 아래 표1과 같이 적용한다. <개정 2024.8.1.>

[표1] 비중앙급전발전기의 하루전발전계획 반영

구 분	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하루전발전계획 반영
비용자료	1. 기동비용(SUC <sub>i</sub> ) : 0 2. 열량단가(FC <sub>i</sub> ), 가격상수(NLPC <sub>i</sub> ), 2차증분계수(QPC <sub>i</sub> ) : 0 3. 1차증분계수(LHC <sub>i</sub> ) : 0.86
기술적 특성자료	1. 기동소요시간, 최소발전용량, 최소운전시간, 최소정지시간 : 0 2. 최대발전용량, 출력증가율, 출력감소율 : 99,999

③ 육지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가용능력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육지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 가용능력 = 비중앙급전발전기, 중앙급전 구역전 기발전기 및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의 거래일 기준 최근 7일간 같은 거래 시간대 전력거래량을 시간대별로 평균한 값 +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거래일 기준 최근 7일간 같은 거래시간대 방전량을 시간대별 평균한 값 (단, ⊙재생에너지의 경우 시간대별 예측값을 적용할 수 있음, ▷실적이 확보 되지 않은 날은 제외하고 산정) <개정 2025.7.10.>

④ 제주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가용능력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제주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 가용능력 = 비중앙급전발전기(재생에너지 제외) 의 거래일 기준 최근 7일간 같은 거래시간대 전력거래량을 시간대별로 평균 한 값 +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거래일 기준 최근 7일간 같은 거래시간 대 방전량을 시간대별 평균한 값 + 제주 신재생예측시스템의 시간대별 재생 에너지 예측값 - 제주 신재생발전기의 시간대별 출력제어계획값

(단, 실적이 확보되지 않은 날은 제외하고 산정)

- ⑤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는 필수운전발전기(Must Run)에 고정출력으로 적용하다.
- ⑥ 신뢰도발전계획 수립시 규칙 제14.4.1조에 따라 제출된 예측발전량을 활용하여 발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
- 7.2 입력자료의 변환 [신설 2022.6.30.] 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RSCT를 사용하여 7.1의 발전계획 입력자료를 RSC 입력파일 형태로 변환하다.
- 7.3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기준 <개정 2021.1.1.> <번호변경 및 개정 2022.6.30.>
- 7.3.1 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6.1의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한다. 6.1의 마감시간 이후 변경된 자료는 신뢰도발전계획 및 실시간 급전운영에 반영한다.
- 7.3.2 발전계획 수립시 송전손실을 고려하여 발전기출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페널 티계수(Peanlty Factor)를 적용한다. <개정 2021.1.1.> <번호변경 2022.6.30.>
- 7.3.3 발전계획은 송전단출력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요반응자원의 경우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기공급 수전점단위로 한다. <개정 2021.1.1.> <번호변경 2022.6.30.>
- 7.4 하루전발전계획의 입력자료 작성 [신설 2022.6.30.] 하루전발전계획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입력자료를 작성한다.
- 7.4.1 초기치 입력 전일 하루전발전계획의 24시 발전계획량 및 연속운전시간을 입력한다.
- 7.4.2 취득자료 입력
  - 아래 각 항의 취득자료를 입력한다.
  - ① 7.1.1의 발전비용자료
  - ② 7.1.2의 입찰자료
  - ③ 7.1.3의 수요예측자료
  - ④ 7.1.4의 수요반응자원 감축계획량자료
  - ⑤ 7.1.5의 송전제약자료
- 7.4.3 양수발전기 자료입력
  - 규칙 제5.1.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근 3년 유사수요일 3일치 전체 발전기 평균값을 수립일 공급가능용량 비율로 배분하여 입력한다.
- 7.4.4 예비력 입력 [신설 2019.12.13.] <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, 2022.12.27., 2023.9.26.>
  - ① 1차예비력 확보량 입력
  - 별표3 1.3.2의 1차예비력 확보량 기준의 최소값에서 아래 1), 2) 항목을 통

- 해 확보된 용량을 차감하여 입력한다.
- 1) 필수운전 발전기 : Σ(GF상한 AGC 상한)
- 2) 송전사업자용전기저장장치 :  $\Sigma$ (전기저장장치의 1차예비력 제공량) (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1차예비력 산정방식은 별표19를 따른다.) <개정 2022.12.27.>
- ② 주파수제어예비력 확보량 입력

별표3 1.3.1의 주파수제어예비력 확보량 기준의 최소값을 입력한다.

③ 2차예비력 확보량 입력

별표3 1.3.3의 2차예비력 확보량 기준의 최소값을 입력한다.

④ 3차예비력 확보량 입력

별표3 1.3.4의 3차예비력 확보량 기준의 최소값을 입력한다.

- ⑤ 하향주파수예비력 확보량 입력 [신설 2023.9.26.]
- 별표3 1.3.5의 하향주파수예비력 확보량 기준의 최소값을 입력한다.
- 7.4.5 송전제약 입력 <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>
  - ① 7.1.5의 송전제약 취득자료를 토대로 송전제약을 입력한다.
  - ② 입력된 송전제약을 검토 후 저장한다.
- 7.4.6 수도권부하점유율 입력 [신설 2022.6.30.] 전력수요 및 기상실적, 요일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부하 점유율 유사일을 선 정한 후, 유사일의 실적 점유율을 입력한다.
- 7.5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<개정 2021.1.1., 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>
- 7.5.1 발전계획프로그램 실행 7.4를 RSCT에 입력하여 RSC를 실행한다.
- 7.5.2 발전계획 목적함수
  - 발전계획은 발전계획수립기간 동안의 총 발전비용 및 수요감축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예비력, 발전기 자기제약, 송전제약 등 제약을 고려한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 최적화를 수행하여 수립한다. <개정 2022.11.30.>
- 7.5.2.1 발전량 과부족, 예비력 부족, 기타 제약조건 미준수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불가능할 경우 7.5.4의 제약 완화 설정치 기준을 고려하여 발전계획을 재수립한다.
- 7.5.3 예비력 모델링 <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, 2023.9.26.>
  - ① 주파수 조정용량 확보를 위해 공급가능용량, 주파수추종상한(GFmax), 자동발전제어상한(AGCmax) 중 작은 값을 경제급전상한(ECOmax)으로 지정한다.
  - ② 1차예비력은 1차예비력확보량보다 크거나 같다.
  - ③ 주파수제어예비력은 주파수제어예비력 확보량보다 크거나 같다.
  - ④ 주파수제어예비력과 2차예비력의 합은 주파수제어예비력확보량과 2차예비

- 력확보량의 합보다 크거나 같다.
- ⑤ 주파수제어예비력, 2차예비력, 3차예비력의 합은 주파수제어예비력확보량, 2차예비력확보량, 3차예비력확보량의 합보다 크거나 같다.
- ⑥ 1차예비력, 주파수제어예비력, 2차예비력, 3차예비력의 합은 1차예비력확보량, 주파수제어예비력확보량, 2차예비력확보량, 3차예비력확보량의 합보다 크거나 같다.
- ⑦ 하향주파수예비력은 하향주파수예비력 확보량보다 크거나 같다. [신설 2023.9.26.]
- 7.5.4 제약 완화 설정치 기준 [신설 2022.6.30.] <개정 2023.9.26., 2024.8.1.> 발전계획 수립시 발전량 과부족, 예비력 부족, 기타 제약조건 미준수 등에 대한 제약 완화 설정치는 아래 표2와 같으며,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에너지 제약 완화 설정치는 각 예비력 제약가격보다 높고, 각 예비력 제약 완화 설정치는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한다.
  - ②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은 의무적으로 만족해야하므로 에너지 제약 완화 설정치보다 더 높은 제약 완화 설정치를 적용한다.
  - ③ 연료량은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만족해야 하므로 최대출력 초과 제약 완화 설정치와 동일한 제약 완화 설정치를 적용한다.
  - ④ 육지와 제주 간 송전제약은 연계선의 설비용량보다 낮은 제약량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제약 완화 설정치보다 약간 낮은 제약 완화 설정치을 적용한다.
  - ⑤ 양수발전기의 펌핑량은 의무적으로 만족해야 하므로 에너지 제약 완화 설정치보다 높은 최대출력 초과 제약 완화 설정치와 동일한 제약 완화 설정치를 적용한다.
  - ⑥ 전기저장장치의 충전량 제약 완화 설정치는 양수발전기의 펌핑량 제약 완화 설정치와 동일한 설정치를 적용한다.

[표2] 발전계획 수립시 제약완화 설정치 (단위: 원/kWh)

구 분		하루전시장		비고	
		적용	비율		
0	발전력 (에너지)	초과 (Surplus Gen)	16,000	100%	LOLE 기준*을 만족하는
		부족 (Deficit Gen)	16,000	100%	공급지장비용 * 0.3일/년
0	전국 예비력	1차예비력 부족 (Primary Reserve)	12,000	80%	에너지 제약
		주파수제어예비력 부족 (Regulation Reserve)	9,000	60%	보다 낮으나, 예비력별로
		2차예비력 부족 (Spinning Reserve)	6,000	40%	제약가격 차등

구 분		하루전시장		ш ¬	
		적용	비율	비 고	
		3차예비력 부족 (Operating Reserve)	1,000	10%	
8	발전기 기술적 특성	최대출력 초과 (Capacity/Unit Max)	21,000	130%	의무적 만족을 위하여 에너지
		최소출력 부족 (Capacity/Unit Min)	19,000	120%	
		증·감발율 부족 (Unit Ramp Violation)	17,000	110%	제약가격 이상
4	발전기 제약	연료량 초과 (Surplus Energy Constraint)	21,000	130%	의무적 만족을 위하여 에너지
		연료량 부족 (Deficit Energy Constraint)	21,000	130%	제약가격 이상
6	송전제약	연계선(육지·제주) 제약 초과 (Tie Line Max)	14,000	90%	연계선 설비용량 여유
		발전그룹 제약 (Generic Constraint Penalty)	17,000	110%	발전기 그룹의 발전제약
<b>6</b>	양수/ESS	펌핑/충전용량 초과 (Plant Storage Violation)	21,000	130%	상부저수지 수위 및 베터리 충전용량 만족
0	하향 주파수 예비력	하향주파수예비력 부족 (Regulation Down Reserve)	8,000	50%	에너지 제약 보다 낮음

#### 7.5.5 결과검토 <개정 2021.1.1., 2022.6.30.>

하루전발전계획 수립결과에 대해 제약조건 및 전력수요의 만족여부를 검토하여 하루전발전계획을 확정한다.

7.6 하루전발전계획 수립결과 및 계통한계가격의 공개 <개정 2021.1.1., 번호이 동 및 개정 2022.6.30.>

#### 7.6.1 발표시각

규칙 제2.4.2조의2 및 제5.1.2조에 따라 하루전발전계획 결과 및 계통한계가 격을 공개한다.

① 평일: 17시까지 발표

### ② 휴일

- 1. 휴일이 1일인 경우 : 첫째 거래일은 17시까지, 다음날의 경우 18시까지 발표
- 2. 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: 첫째 거래일은 17시까지, 다음날의 경우 18시까지, 셋째 거래일은 19시까지 발표
- 3.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: 규칙 별표4 12.2에 근거하여 사전에 조정된 발전계획 수립일정에 따라 발표

### 7.6.2 공개방법 [신설 2022.6.30.]

규칙 제2.4.2조의2 및 제5.1.2조에 따라 하루전발전계획 결과 및 계통한계 가격을 7.6.1의 발표시각까지 전력거래시스템(e-power market)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,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4시까지 통지할 수있다.

- 7.6.3 IT시스템의 장애를 비롯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하루전발전계획 수립결과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통지할수 있다. [신설 2021.1.1.] <번호변경 및 개정 2022.6.30.>
- 7.6.4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후 IT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류 또는 송전제약 및 수요 예측자료 등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하루전발전계획을 재수립 하고, 발전계획 결과 및 계통한계가격을 재통지할 수 있다. [신설 2021.1.1] <번호변경 및 개정 2022.6.30.>
- 7.7 신뢰도발전계획의 수립 [신설 2022.6.30.]
- 7.7.1 규칙 제5.1.3조에 따라 하루전발전계획의 수립 이후 거래일 실시간 계통운영을 위해 6.1의 마감시간 이후 변동된 아래 계통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1.> <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>
  - ① 중앙급전발전기의 고장이나 공급가능용량의 변경
  - ② 송전제약 및 예상하지 못한 송변전설비의 장애
  - ③ 예측수요의 변화
  - ④ 시운전 및 각종 시험관련 계획의 변동
  - ⑤ 수력발전기 일일 총발전량 적용 변경
  - ⑥ 양수발전기 양수 및 발전량 적용 변경
  - ⑦ 페어발전기 운전, 현장설비 정기검사 등 발전소 현장여건을 반영한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
  - ⑧ 송전손실 및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
  - 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(증대)
  - ⑩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정비계획
  - ①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의 시간대별 구역수요 초과 입찰 공급가능용량
  - ① <삭제 2022.11.30.>
  - ③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인 연료전지발전기의 정지계획
  - (4) 계통신뢰도 확보를 우선 고려한 양수발전계획
  - ⑤ 전력수요 예측오차와 발전기 불시고장 등 전력수급 불확실성을 고려한 운영예비력 확보 [신설 2022.6.30.]
  - ⑤ 자연재해, 사회적 특수일 등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확보가 필요한 사항 [신설 2022.6.30.]
  - ① 기타 발전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 [신설 2022.6.30.]
  - ⑧ 준중앙급전발전기의 자체발전계획량 [신설 2024.10.8.]

- (9)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의 시간대별 분산특구 수요 초과 입찰 공급가능 용량 [신설 2025.7.10.]
- 7.7.2 신뢰도발전계획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예비력 확보
  - ① 시운전발전기는 신뢰도시험 개시 이후 시운전계획을 고려하여 예비력에 반영한다.
  - ②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을 발령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반응자원의 전력수요 의무감축 요청량을 반영하여 예비력을 확보한다.
  - ③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어 예상 공급예비력 5,500MW 미만 시 구역수요 초과입찰한 모든 중앙급전 구역전기사업자의 입찰 공급가능용량 및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의 입찰 공급가능용량을 모두 반영하여 예비력을 확보한다. [신설 2019.1.2.] <개정 2019.12.13., 2021.12.28.> <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. 2025.7.10.>
  - ④ 정지상태 3차예비력 및 속응성자원 확보하고 대상 발전기를 지정한다. [신설 2019.12.13.] <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>
  - ⑤ 특수일기간 및 특수경부하기간에는 운영예비력 2,000MW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. [신설 2011.12.2] <개정 2019.12.13.> <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>
  - ⑥ 규칙 별표3 1.0의 운영예비력과 거래일에 발생 가능한 신재생 및 기상 변동성, 발전기 추가 탈락에 따른 규칙 제5.1.4조의 수급경보 수준과의 여유분을 추가 고려할 수 있다. [신설 2022.6.30.]
  - ⑦ 전력거래소는 ⑥의 여유분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정하여 계통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[신설 2022.6.30.] <개정 2023.9.26.>
  - ⑧ 비중앙급전발전기 영향에 따른 신뢰도 유지대책으로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. [신설 2022.12.27.]
  - ⑨ 신뢰도발전계획의 하향예비력은 계통제약(송전제약 등)을 고려하여 각 호에 따라 별표3 1.3.6의 하향예비력 확보량 이상으로 확보한다. [신설 2023.9.26.] <개정 2024.10.8.>
  - 1. 신뢰도 발전계획 수립결과 [별표 3] 1.2.5.2의 "정상단계"에 이르지 못하거나,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표의 조치를 통해 하향예비력을 추가 확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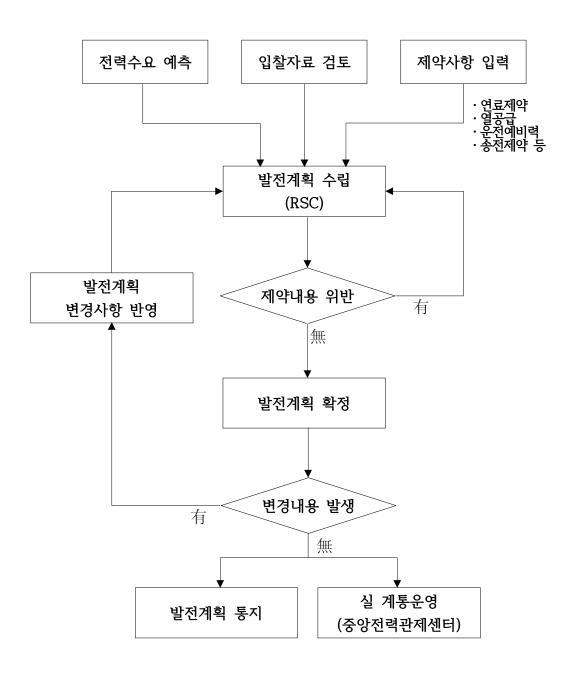
구분	조치사항
발전사업자	계통상황을 고려한 필수운전발전기 (발전기 자기제약 제외) 지정,
	열제약 및 시운전 발전기 일정 조정 등
수요관리사업자	플러스 DR 활용 등
송·배전사업자	송전사업자 전기저장장치 활용 등

- 2.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향예비력 수준이 [별표 3] 1.2.5.2의 "정 상단계"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중앙급전 발전기를 대상으로 출력제어 계획 을 수립한다.
- ⑩ 준중앙급전발전기의 자체발전계획량과 제어가능용량을 활용하여 예비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. [신설 2024.10.8.]
- 7.7.3 발전계획의 조정은 기 작성된 발전계획 데이터베이스에 입찰자료 및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후 발전계획 수립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21.1.1.> <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>
  - 1. 송전계통의 추가적인 제약사항 발생여부를 분석하여 적용하고, 제약사항 발생시 "송전제약검토서"를 작성한다.
  - 2. 각 발전기의 시간대별 예비력을 재산정한다.
  - 3. 각 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량을 재산정한다.
- 7.7.4 전력거래소의 관제사는 신뢰도발전계획을 통지한 후 다음의 변경사유가 발생 될 경우 재입찰자료 등을 확보하여 신뢰도발전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2021.1.1., 2022.6.30.>
  - ① 발전력 1,000MW 이상 고장 또는 공급가능용량 1,000MW 이상 입찰변경 시
  - ② 송변전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발전제약 초래시
  - ③ 수요예측 오차 1,000MW 이상 발생 전망시
  - <개정 2021.1.1., 번호이동 및 개정 2022.6.30.>
- 7.7.5 발전계획의 변경시 추가된 송전제약 및 시간대별 예비력지정 변경내용 등을 포함하여 규칙 제5.1.2조 제2항 규정의 내용을 운영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에게 즉시 통지한 후 실 계통에 운영한다. <개정 2021.1.1., 2022.6.30.>
- 7.7.6 변경된 신뢰도발전계획 및 각 제약내용, 기타 변경입찰내역 등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 <개정 2021.1.1., 2022.6.30.>
- 7.8 하루전발전계획 관련 자료의 보존, 활용, 폐기 [신설 2022.6.30.]
- 7.8.1 전력거래소는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자료를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파일 의 형태로 보관한다. 단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관련 자료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보관한다.
- 7.8.2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담당 부서장은 자료가 멸실,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또

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- 8.0 붙임
- 8.1 발전계획 수립 흐름도 <개정 2021.1.1.>
- 8.2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제약 반영기준 [신설 2022.6.30.] <개정 2024.10.29.>
- 8.3 페어발전기 운영 계획 기준 [신설 2022.6.30.]

# 발전계획 수립 흐름도 <명칭변경 2021.1.1.>



## [붙임8.2]

# 발전계획별 수립 및 계통제약 반영기준 [신설 2022.6.30.]

# □ 발전계획별 수립기준

	구 분	하루전 발전계획	신뢰도발전계획	
수립 목적		계통한계가격 산출 및 최초수립 발전계획	실시간 계통운영	
수립 시점		17시	18시 이후	
수요 예측		13시	16시 이후	
입	찰 마감	거래일 전일 11시	수립 시점 변경사항 반영	
계 통 제 약	송전	발전량 제약(반영)	전체 발전량 제약 (반영, 운전상태별 제약 추가 포함)	
		운전대수 제약(반영)	운전대수 제약 (반영, 운전상태별 제약 추가 포함)	
		휴전제약(미반영) * 단, 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반영	휴전제약(반영)	
	예비력	별표3 1.0의 운영예비력	별표3 1.0의 운영예비력, 신재생 및 기상 변동성, 발전기 탈락에 따른 규칙 제5.1.4조의 수급경보 수준과의 여유분	

<개정 2022.11.30., 2024.10.29.>

#### [붙임8.3]

## 페어발전기 운영 계획 기준 [신설 2022.6.30.] <개정 2023.6.30..>

- □ 전력거래소는 계통안정 운영을 위해서 기력 페어발전기 급전정지 및 기동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  - 가. 페어발전기 2대 모두 운전 중인 경우 1대는 우선 급전정지
  - 나. 페어발전기 중 1대가 정비 또는 고장으로 정지 중이면 운전 중인 발전기는 급 전정지에서 제외
  - 다. 가, 나 목을 고려하여 급전정지 후에도 추가 기력 발전기 급전정지 필요시가, 나 목을 고려하지 않고 연료비 순위에 따라 급전정지 하되 발전단지별 최소 운전 발전기 대수를 고려하여 급전정지
  - 라. 페어발전기 2대 모두 정지 중인 경우 1대는 우선 기동
  - 마. 라 목을 고려하여 기동 후에도 추가 기력 발전기 기동 필요시 라 목을 고려하지 않고 연료비 순위에 따라 기동하되 발전단지별 운전여건을 고려하여 기동
  - 바. 가, 나, 라 목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단독발전기가 페어발전기로 인하여 급 전정지 및 기동이 빈번해질수 있는 경우 별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.